## 방송문화진흥회법



[시행 2025. 9. 9.] [법률 제21046호, 2025. 9. 9., 일부개정]

방송통신위원회 (방송정책기획과) 02-2110-1415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(最多出資者)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,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제2조(법인격) 방송문화진흥회(이하 "진흥회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제3조(설립 등) ①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제4조(정관)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4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6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- 7. 방송문화진흥자금에 관한 사항
- 8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9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- 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(이하 "방송통신위원회"라 한다)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진흥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<신설 2019, 12, 10.>
-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진흥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.<신설 2019, 12, 10.>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제5조(업무)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
- 2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
- 3.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·관리
- 4.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**제6조(임원)**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이사와 감사(監事) 1명을 두며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## 2025. 9. 9.>

-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(互選)한다.
-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.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,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.<개정 2025. 9. 9.>
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이 경우 정수(整數)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,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,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.

각 교섭단체별 = 5 × 해당 교섭단체 + 각 교섭단체 추천인 수 = 5 × 의석수 의석수의 합계

- 2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(「방송법」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 2명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
- 4. 활동기간, 주요 활동내역,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
- 5. 활동기간, 주요 활동내역,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,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,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「방송법」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.<신설 2025. 9. 9.>
- 1.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
- 2.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
- 3. 추천 이유
- ⑥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.<개정 2025. 9. 9.>
-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(非常任)으로 한다.<개정 2025. 9. 9.>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## 제7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(監査)한다.
-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,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- 2.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3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「공직선거법」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5. 「공직선거법」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, 통신, 법률,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6.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 •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.

-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
- 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25. 9. 9.>
-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.<신설 2025. 9. 9.>
- ⑥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 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<신설 2025. 9. 9.>
-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개정 2025. 9. 9.>
-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25. 9. 9.>
- 1.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
- 2.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감사·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[전문개정 2014. 6. 3.]

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 <개정 2025. 9. 9.>

- 1. 예산 자금계획 및 결산
- 2.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3.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- 4. 정관의 변경
- 5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
- 6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- 7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- 8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
- 9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
- 10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10의2. 제6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임명제청
- 10의3.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
- 11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- 제10조의2(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) 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.
 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 - 2. 「정당법」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- 3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4. 「공직선거법」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- 5. 「공직선거법」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, 통신, 법률,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- 6.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-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 6. 3.]

- **제10조의3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)**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·연령별·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「공직선거법」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.
  -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  -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한다.
  -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  -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.
  -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5. 9. 9.]

- 제11조(사무처) ①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.
  -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,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-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 -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(任免)한다.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제12조(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)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(財源)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 흥자금(이하 "자금"이라 한다)을 둔다.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- 제13조(자금의 조성)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- 1.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(剩餘金) 배당
  - 2. 제2항에 따른 출연금(出捐金)
  - 3.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
- 5.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
- 6. 그 밖의 수입금
-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제14조(자금의 용도 및 관리)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- 1.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
- 2.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
- 3.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
- 4.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사업
- ② 자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- **제15조(예산 및 결산 등)**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4. 6. 3.]
- 제15조의2(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)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  - 1. 임원의 보수, 각종 수당 내역
  - 2.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
 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1. 10. 19.]

제16조(「민법」의 준용)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4. 6. 3.]

**부칙** <제21046호,2025. 9. 9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진흥회의 이사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회의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진흥회의 이사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